심 사 보 고 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88

2018. 4. 5.(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8년 3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3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3월 23일

-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진섭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구명칭 변경

○ 지정해제에 따른 지구명칭 삭제

나. 주요내용

○ 지구명칭 변경 및 삭제(안 제2조)

- 바이오메디컬지구 ⇒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 바이오·관광·비즈니스지구 ⇒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 에어로폴리스지구 ⇒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 에코폴리스지구(삭제)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호식)

○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구명칭 변경 및 지정해제에 따른 지구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바이오메티컬지구를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로, 바이오·관광·비지니스지구를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로, 에어로폴리스지구를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로 변경하고 에코폴리스지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 변경 및 지정해제에 따른 지구명칭 변경 및 삭제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88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363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8년 3월 14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88

제출연월일 : 2018년 3월 14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구명칭 변경

○ 지정해제에 따른 지구명칭 삭제

2. 주요내용

○ 지구명칭 변경 및 삭제(안 제2조)

- 바이오메디컬지구 ⇒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 바이오·관광·비즈니스지구 ⇒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 에어로폴리스지구 ⇒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 에코폴리스지구(삭제)

3. 의안전문 : 붙 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바이오메디컬지구와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 에어로폴리스지구, 에코폴리스지구 4개 지구로 하며”를 “4개 지구로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이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구별 관할구역(제2조 관련)

지 구 별	관 할 구 역	비고
계 (4개 지구)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연제리 일원	바이오 밸리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정중리 일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일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바이오메디컬지구와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 에어로폴리스지구, 에코폴리스지구 4개 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조(관할구역)----------4개 지구로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이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관련법령 발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만 준용한다.

1. 제4조제2항 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3항: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3. 제4조제5항: 제1항 전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